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551
----------	------

2020년 6월 17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5월 25일 김용연 의원 외 11명
2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3. 상정일자 :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6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요지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이 추가되고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조문의 순서를 상위법 인용 조문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을 추가함(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).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함
(안 제10조제3항제7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유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「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),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3항제7호 신설)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(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),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함(안 제10조제3항제7호 신설).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, 전문 심리상담 지원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)---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6. <u>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</u></p> <p>7. <u>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</u></p> <p>8. <u>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</u></p> <p>9.·10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지원센터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10조(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지원센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7. ~ 10. (생 략)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	<p>7. 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</p> <p>8. ~ 11. (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

나. 사업 추진 현황

1)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사업

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복지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만 18 ~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개별적 욕구에 기초한 돌봄 서비스 및 자조모임, 음악활동, 미술활동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. '20년 예산은 7,573백만원, 지원 목표 인원은 220명임.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의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한 각종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
- 추진대상 : 만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
- 추진내용 :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교육, 취미, 체육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
- 추진방법 : 각 자치구별 이용자 제공기관 선정하여 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지원센터 공동협력으로 추진
- '20년 예산 : 7,573백만원

- 위 사업은 신청자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 판정 후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, 선정된 수급자는 장애인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임.

<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추진체계>



추진체계	업무내용
보건복지부	국고지원, 사업지침 시달, 유권해석
서울시	시비지원, 자치구 문의 및 유권해석 요청 수합, 자치구 운영 지원
자치구	이용자 발굴, 제공기관 선정·감독,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
발달장애인지원센터	대상자 선정 조사실시, 제공기관 프로그램 컨설팅
제공기관	주간활동 서비스 제공
사회보장정보원	예탁금관리,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

출처:장애인자립지원과

- 현재 사업 추진체계를 살펴볼 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신청자에 대한 종합조사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예산·인력의 용이한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2)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

-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복지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만12~만18세 미만 일반 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'20년 예산은 3,418백만원, 지원 목표 인원은 630명임.

사업개요

- 추진대상 : 만12세~만18세 미만 일반 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)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
- 사업내용 :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방과후 제공인력이 방과후 시간에 교육, 훈련, 여가, 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(바우처)
- 추진방법 : 각 자치구가 선정한 방과후 활동제공 기관에서 고용한 활동 제공 인력 1인이 2~4명의 이용자에게 그룹서비스 제공
- 20년 예산 : 3,418백만원

<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추진체계>



추진체계	업무내용
보건복지부	국고지원, 사업지침 시달, 유권해석
서울시	시비지원, 자치구 문의 및 유권해석 요청 수합, 자치구 운영 지원
자치구	이용자 발굴, 제공기관 선정·감독,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
발달장애인지원센터	대상자 선정 조사실시, 제공기관 프로그램 컨설팅
제공기관	주간활동 서비스 제공, 협력학교 개발 및 공간사용협약 체결등
사회보장정보원	예탁금관리,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

출처: 장애인자립지원과

- 현재 사업 추진체계를 살펴볼 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신청자에 대한 종합조사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예산·인력의 용이한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3) 발달장애인 및 부모에 대한 성교육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2항은¹⁾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시장에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약80%, 매년 15~20명 정도²⁾ 가 발달장애여성(지적장애) 성폭력 피해상담이었으며, 또 다른 조사에서도 2013년 기준 장애인대상 성범죄 전체 피해자 1,789명 중 72%인 1,288명³⁾이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됨.

1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0조(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
2) 장애여성 공감가이드북 16P

- 한편, 발달장애인 성범죄(발달장애인이 가해자인 성범죄)는 매년 60~70건으로 절도(189건)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, 재범율은 35~45%로 일반인보다 3.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, 재범방지 교육은 비장애인 사고에 맞춰져 있어 발달장애인의 수준에 맞춘 성행동 교정 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됨.⁴⁾
- 이같은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없어 성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19.10.31.개정·시행)되면서,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.
- 한편,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사업 예산은 '20년 기준 80,000천원임.

<표>발달장애인 및 부모 대상 성교육 예산 현황

(단위: 천원)

부서명	구분	'20예산	상세 설명
장애인 복지정책과	<input type="checkbox"/>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지원	44,000	○ 영유아기 부모교육,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, 성인권교육 등 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 부모 교육 지원
	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권교육지원	36,000	○ 성인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를 위한 성교육 지원

* 자료: 2020년 예산사업설명서, 복지정책실

3)[뉴스탐색]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 성폭력 심각한데...부모가 알아서 하라는 정부, 헤럴드경제,2018.0421

4)[사각지대 놓인 발달장애인(발달장애인) 성교육]친근감 표시하려다 범법자...잘못된 성 인식에 음란물 모방도, 서울경제, 2017.11.12

3 종합 검토 의견

-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쟁점사항은 없음.
-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예산·인력의 용이한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발 의 자 : 김용연·이병도·김화숙·
봉양순·이정인·최기찬·
이영실·김혜련·오현정·
김동식·서윤기·김소양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이 추가 되고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조문의 순서를 상위법 인용 조문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을 추가함.(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)
- 나.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함.(안 제10조제3항 제7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중 “발달장애인”을 “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,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
7.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
8.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

제10조제3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, 전문 심리상담 지원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</u> 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6. <u>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</u></p> <p>7. <u>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</u></p> <p>8. <u>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</u></p> <p>9. 10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· ② (생략)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7. ~ 10. (생략) ④ · ⑤ (생략)</p>	<p>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</u> 8. ~ 11. (현행 제7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